

2020년 컨소시엄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1. 채용개요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¹⁾	근무지 ²⁾
본부 행정	2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사업(전략분야) 운영 - 훈련생 모집 및 안내 - 관련 회계 증빙 처리 등	컨소시엄팀 (서울 강동)

1) 채용 예정분야 NCS기반 직무기술서 : 붙임 2 참조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상정빌딩 7층

■ 근로조건

구 분	세 부 근 로 조 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무기간	○ 채용예정일(2020. 6. 22.)부터 '20. 12. 31.까지
보수(月)	○ 국고지원금 인건비 범위 내 책정·지급*

* 최종 합격자의 경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본부 행정	<input type="radio"/>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input type="radio"/> 채용예정일(2020. 6. 22.)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input type="radio"/>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62세 이상 제외*)

* 채용예정일 2020. 6. 22. 기준 1958. 6. 23. 이전 출생자 제외

3.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4. 가산점

구분	우대대상	대상전형		가산점 (만점 기준)	부여기준
		서류	면접		
법정	장애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또는 10%	관련법령 ¹⁾ 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한국사 자격증	전 분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2%, 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급) 이상의 자격자 - 1급 3%, 2급 2%, 3급 1%

1) 관련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10%까지 적용

5. 전형절차

전형단계	주요내용	일정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알리오 등	'20. 6. 1. ~ 6. 8. (예정)
서류전형	• 합격자 심의	'20. 6. 9.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 6. 10. (예정)
	• 이의신청 및 접수	'20. 6. 10. ~ 6. 11. (예정)
면접전형	• 경험면접	'20. 6. 15. (예정)
최종합격자 확정 및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20. 6. 17. (예정)
	• 이의신청 및 접수	'20. 6. 17. ~ 6. 18. (예정)
임용	• 임용일	'20. 6. 22. (예정)

*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함

6. 전형별 심사기준

가.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상위 성적 순 선발

* 평가방식 : 입사지원서의 교육, 자격,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

나. 면접전형

- (평가요소 및 유형)

평가요소	면접유형
① 직업관(직업윤리) ②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발전가능성 ⑤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경험면접

- 서류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이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rd@koelsa.or.kr)
-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서류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 파일명을 '컨소시엄팀 채용_기간제_성명'으로 변경 	
서류전형 합격자 (이메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 검증용 서류(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우편 제출)	공 통	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사서류 각 1부(별도안내)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우편 주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1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재경영실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8. 유의사항

- 제출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불성실 작성(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등)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원서 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제출 시 자격증, 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입력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입력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전형 중이나 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각종 자격 해당여부 등이 응시원서의 입력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되니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7.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에 제시된 대로 접수합니다. 만약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 내¹⁾에 반환 청구 시 반환을 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이때, 채용서류의 반환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최종 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통한 부정합격이 적발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공단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 공지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MMS로 개별 통지 됩니다.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의 경우 채용 담당자(☎055-751-0988, 평일 14시~17시)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우대사항(상세)
 2. NCS 직무 설명자료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1) 반환 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붙임 1] 우대사항(상세)

우대사항 (법정 가산)

<1> 국가보훈 대상자(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우대 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시고
추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허위로 판명될 경우 득점 순위와 관계없이 합격 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애국지사의 가족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11급

 - 다. 삭제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상이등급 6급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붙임 2] NCS 직무 설명자료

행정_직무기술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1. 총무 03. 일반사무	01. 총무 02. 사무행정
채용분야	행정			
공단 주요사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 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책무 (능력단위)	○ (총무) 업무지원, 총무문서관리, 총무보안관리 ○ (일반사무) 교육 훈련생 모집, 교육 훈련생 안내			
직무수행내용	○ (총무) 총무는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일반사무) 해당 직무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사업(전략분야)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생 모집, 안내 및 회계 증빙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필요지식	○ (총무) 출장관리규정, 증명서 종류(용도, 확인사항), 표준계약서 작성, 문서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 보안규정, 문서 분류 방법, 문서관리 프로세스, 문서 작성법 ○ (일반사무) 교육운영방법 등			
필요기술	○ (총무)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재고관리 능력, 협상력, 문서 분류 기술, 문서작성 기술 ○ (일반사무) 교육요구 분석력, 강사 및 교육생과의 의사소통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 (총무) 보안의식 준수, 공평한 원칙 준수,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 태도, 고객 서비스 마인드, 윤리의식 ○ (일반사무) 전략적 마인드, 협업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정확한 업무 처리태도, 업무협조노력 등			
필요자격	○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NCS능력단위 정보 확인			

[붙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